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시료채취·분석 및 모델링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서울특별시중량물재생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18-83-00166
	성명(대표자) 서울특별시중량물재생센터		생년월일
	전화번호 02-2211-2580		휴대번호
	주소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량물재생센터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량물재생센터		전화번호 02-2211-2580

설치예정일 2019년 10월					가동개시예정일					
변경내용	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별도송부 참조									
	방지시설 변경	방지시설		용량	수량	방지시설		용량	수량	
		별도송부 참조								
	오염물질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별도 송부 참조										
그 밖의 변경										
변경신고 사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신청인 성명

서울특별시중량물재생센터소장(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향후 5년간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향후 5년간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향후 5년간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1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사용연료 성분분석서,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 공자에만 해당합니다)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허가증 원본 1부 <p>※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7일로 하고,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p>	수수료 100,000원
------	---	-----------------

처리절차

